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0,670,474	10,520,114
일반회계	321,789,163	9,653,675
특별회계	28,881,311	866,439
기타특별회계	28,881,311	866,43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11,050	21,33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49,176	7,475
주차장특별회계	3,530,541	105,916
동삼하리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892,912	686,7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5,568	2,26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4,500	735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74,522	2,236
재정비축진특별회계	1,323,042	39,69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15,10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